

요약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가 확대되면서 체육활동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아직 많은 체육시설업자들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음. 이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체육시설들이 타 사업체에 비해 영세하며 업력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안전사고에 의한 배상책임위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 의무가입 확대, 공제조합 설립,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의 생활체육¹⁾ 참여가 확대되고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체육시설 사업자의 배상책임위험 노출도 증가하고 있음

-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국민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관련 체육시설 업체 수도 늘어남(〈그림 1〉, 〈그림 2〉 참조)
 -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²⁾은 2014년 54.8%에서 2019년 66.6%까지 상승한 뒤 코로나19 사태로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23년 기준 62.4%임
 - 2022년 말 기준 등록·신고된 체육시설업소는 60,644개소로 2014년 말 대비(56,629개소) 7.1% 증가하고, 특히 체력단련장(헬스장 및 휘트니스 센터)은 7,363개소에서 12,669개소로 급격히(72.1%) 증가함³⁾
- 스포츠 활동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64.3%가 부상 경험이 있음⁴⁾
 - 보디빌딩(헬스) 체육활동의 경우 부상 경험 비율이 73.7%로, 생활스포츠 전반의 부상률보다 높음⁵⁾
- 보디빌딩(헬스) 체육활동에서 부상을 당한 생활체육인들은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았다고 답변함
 - 부상이 발생한 장소가 '안전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43.2%만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였으며, 이는 '바닥이 평평'한 지에 관한 질문에 79.5%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과 대조적임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례 중 스포츠/레저시설에서 발생한 건수가 코로나19

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는 생활체육의 종목으로 걷기(조깅, 속보), 등산, 보디빌딩(헬스), 체조, 수영, 축구, 골프, 볼링, 배드민턴, 자전거, 당구, 요가, 필라테스, 탁구, 농구, 줄넘기, 낚시, 테니스, 훌라후프, 게이트볼, 족구,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스노우보드, 육상, 야구, 암벽등반, 수상스키, 태권도, 아쿠아로빅, 인라인스케이트, 마라톤, 권투, 배구, 격투기, 래프팅, 서바이벌, 스킨스쿠버, 스쿼시, 검도, 유도, 승마, 라켓볼, 빙상, 사격, 인라인하키, 소프트볼, 핸드볼, 철인3종, 항공레저(스카이다이빙 등), 요트, 씨름, 럭비, 레슬링, 카누, 석궁, 기타 등을 제시하여 체육활동을 조사함

2)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 종목에 참여한 비율임

3) 문화체육관광부(2023),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4) 스포츠안전재단(2019), 「2019 스포츠 안전사고 실태조사」

5) 설문조사 결과 일반 국민 중 11.8%이 보디빌딩(헬스) 체육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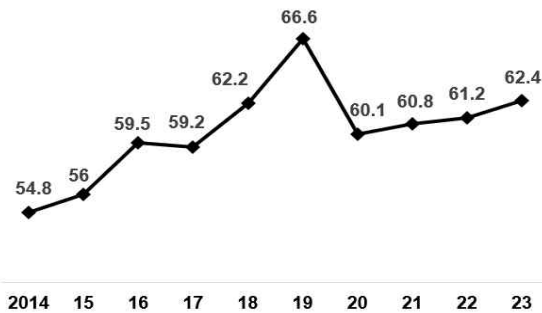
이후 증가함(2020년: 908건 → 2021년: 593건 → 2022년: 1,243건 → 2023년: 1,665건)⁶⁾

- '헬스 및 휘트니스 센터'에서 발생한 건수 또한 늘어남(2020년: 34건 → 2021년: 23건 → 2022년: 39건 → 2023년: 52건)

- 안전사고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도 늘어나고 있음
 - 헬스장 회원이 이미 작동 중인 러닝머신에 올라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에 대하여 회원들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 헬스장 관리인이 피해액의 70%를 책임짐⁷⁾
 - 일대일 맞춤 운동(Personal Training) 중 헬스장 회원이 십자인대와 연골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하여 헬스 트레이너는 회원의 건강·몸 상태를 파악하여 지도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고, 트레이너를 고용한 사업자도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므로 트레이너는 40%, 사업자는 20%의 책임을 부과함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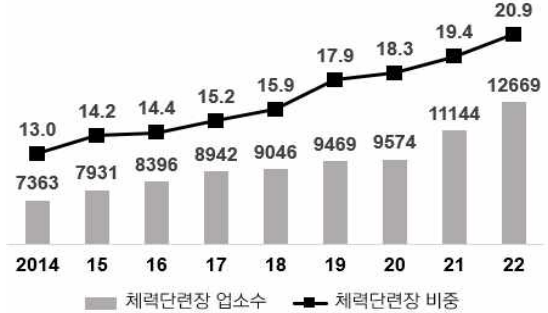
〈그림 1〉 생활체육 참여율

(단위: %)



〈그림 2〉 체력단련장 업체 수 및 비중

(단위: 개소, %)



주: 주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생활체육에 참가한 비율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4~2023), 「국민생활체육조사」

주: 전체 체육시설 업소 수 대비 체력단련장의 비중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2023),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 체육시설들 대부분은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제26조는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엔 의무가입이 면제됨
 -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체육도장업,⁹⁾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지정함
- 2022년 말 기준 등록·신고된 체육시설업소 60,644개소 중 57,681개소(약 95.1%)는 의무가입이 아닌
 - 그중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체력단련장업과 체육도장업은 총 27,399(약 47.5%)개소임

6) 한국소비자원(2020~2023),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분석」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나66904 판결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1. 30. 선고 2021가단106464 판결

9) 태권도장, 검도장, 복싱장 등이 '체육도장업'에 속함

○ 체육시설들은 영세하거나 업력이 길지 않아 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으므로 생활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배상책임위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2023년 기준 보험 가입이 임의가입인 체육시설들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36.7%에 그침(〈그림 3〉 참조)
 - 원수보험료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95.7억임
-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¹⁰⁾과 2021년¹¹⁾에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 가입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단됨
- 202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의 경우 절반가량의 사업체는 연 영업이익이 4백만 원 이하이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의 연 영업이익 중간값인 1천 4백만 원보다 낮음¹²⁾
 - 업력의 경우,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은 평균 5.8년으로, 나머지 사업체의 8.3년보다 짧음
- 국내 창업기업 5년 후 폐업률이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에서 가장 높아(77.7%, 전체 평균은 66.2%) 체육시설들은 장기적 위험관리에 대한 수요가 타 업종에 비해 낮을 수 있음¹³⁾

〈그림 3〉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실적

(단위: 억 원, %)



주: 임의가입 체육시설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체육시설들이며, 비중은 전체 보험 계약건수에서 가입이 의무인 체육시설들의 보험 가입 건수를 제외한 후 임의가입 체육시설 수로 나눠 산출함. 단, 2023년의 경우 2022년의 체육시설 업소 수를 이용함

자료: 보험통계조회서비스(INCOS); 보험개발원; 문화체육관광부(2015~2023),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 배상책임위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관련 분쟁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 의무 가입 확대, 공제조합 설립,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 추진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보험요율을 낮출 가능성 또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의무가입 확대 추진 시 보험회사가 현장 실사를 통하여 체육시설의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전 점검 강화 및

10) 한국금융(2014. 3. 19),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 보험가입 의무화되나”

11) 메디컬투데이(2021. 2. 2), “태권도 등 체육도장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검토”

12) 2015년 경제총조사에선 체력단련장과 체육도장의 연 영업이익의 중간값은 1천 6백만 원으로 나머지 사업체의 중간값인 1천 8백만 원보다 낮음

13) 양금희 국회의원 보도자료(2023. 10. 26), “창업 5년 이후 10개 중 6개 기업이 폐업”

안전사고 감소¹⁴⁾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험요율이 조정되고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현장 실사는 보험회사의 비용 증가 요인이므로 보험요율에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검토가 필요함
- 보험료 요율을 낮추는 방안으로 공제조합이 배상책임위험 보장 보험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음¹⁵⁾
 - 공제조합 보험은 모집 수수료가 없어 일반 보험보다 보험요율이 낮으나 공제운영조직이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상품을 새로 도입해야 하므로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안전사고 관련 분쟁 및 상담사례를 수집하고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관련 사례들은 소비자24 포털,¹⁶⁾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등에 공개되어 있음¹⁷⁾

○ 보험 가입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혹은 보험사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함

-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험요율에 반영하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시설 안전안심인증제도¹⁸⁾로 민간 체육시설에 안전 등급을 부여하고, 체육시설알리미 사이트를 통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했거나 안전 등급을 받은 체육시설을 공개함¹⁹⁾
 - 이러한 정보 등을 보험요율에 반영하여 사업자의 안전사고 방지 노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적발이 어려워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 권일성·강동욱(2023)²⁰⁾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기 유형을 조사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으며,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또한 비슷한 대응 방안을 세울 수 있을 것임
 - 사고 직후 바로 가입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실제 사고발생일을 찾고 조사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CC-TV, 최초 내원일시, 상해의 수상일시, 사고 관련자·목격자 등의 사고일시 진술 등이 그 예시임
 -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사기는 사고접수 내용이 대개 어설프며, 사고 현장에 대한 방문 조사, CC-TV, 피의자의 휴대전화 번호 위치가 당시 사고 현장과 같은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14)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소규모 체육시설은 자율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게 되어 있어 점검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음

15) 최창희·홍민지(2020), 『공제보험 현황 조사』, 보험연구원

16) 분쟁조정결정사례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17) 안전사고 관련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와 분쟁조정, 법원 등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있음

18) 소규모 민간 체육시설 중 서류평가로 참여 대상을 선정한 뒤 3개월 간 안전관리 미션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하는 사업임
2024년에는 체육도장업, 체육교습업(수영, 빙상, 야구, 축구 등을 가르치는 시설), 수영장업 등을 대상으로 120개소가 선정됨

19) 현재 안전등급을 부여받은 체육시설은 총 300여 개소로 극히 적으나, 향후 더 많은 체육시설이 참여하는 안전 점검 사업이 개시될 경우 보험요율에 반영하여 체육시설업자의 안전 점검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20) 권일성·강동욱(2023), 「재물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에서의 실제 보험사기 유형과 보험사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